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개정에 따른 성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공중화장실 구분 중 간이화장실 추가 (안 제2조)

○ 간이화장실 추가에 따른 설치 및 관리 신설 (안 제1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”을 “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**간이화장실**·유료화장실”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간이화장실의 설치·관리) ①군수는 전기, 수도, 오수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,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주변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제1항,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간이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남자용과 여자용은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2.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,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및 이용객의 불편신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· 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「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·유료화장실**--------.	
<신설>	제14조의2(간이화장실의 설치·관리) ①군수는 전기, 수도, 오수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,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.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주변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제1항,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간이화장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남자용과 여자용은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2.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,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및 이용객의 불편신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	